

#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안번호 제809호)

## 예비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                                |                 |
|--------------------------------|-----------------|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6. 30    | 고 성 군 수         |
| 나. 회 부 일 자 : 2003. 6. 30       |                 |
|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3. 7. 11 |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 의결 |

###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
-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기금결산보고서
- 채권현재액 및 채무결산보고서
-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보고서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제47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 조 규정과 고성군결산검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에서 정한바에 따라 2002년도에 집행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의회의 결산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 주요골자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면 총 예산현액은 2,458 억 2,370만 5천원이고, 세입액은 2,448억 5,233만 3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6%가 징수되었으며, 세출액은 1,589억 4,405만 5천원으로 64.7%가 집행 되었습니다.
- 예산현액중 일반회계가 2,378억 9,741만 8천원으로 96.8%를 차지하고 특별회계가 79억 2,628만 8천원으로서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의안은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서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위해 제출되었으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과 고성군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한바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한 3인의 결산검사위원이 2003년 5월 19일부터 6월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면밀한 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을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결산의 개괄적인 검토내용으로는 세입분야에서 전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8.9%의 실적을 거두었으나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 사용료 수입중 도로사용료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82.3%, 재산임대 수입중 국유재산 임대료는 징수결정액 대비 81.5%로 사용료와 임대료의 경우 미수납액이 없어야 마땅함에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세출분야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 하였으며, 이는 2회에 걸친 추경이 있었음에도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 재원의 예산으로 반영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예산을 사장시킴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의 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집행부의 효율적인 예산운영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14억 595만 4천원)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재정자립도(14.9%)를 감안할 때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결산승인안은 2002 회계연도 고성군의 수입과 지출내용을 확정적 수치로 표시한 행위로 집행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가부를 결정함으로써 정치적 책임을 해제하는 절차로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수 있는 효력은 없고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며,
- 또한 예산은 예정된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그 예산의 집행실적으로 제반군정의 지출행위가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 지므로 예산현액과 결산이 일치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책정된 예산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에 따른 적법성, 공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결산검사에서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방안 강구를 촉구하고 원안대로의 결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5. 질의 및 답변

- 문 :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얼마나 되는가?
- 답 : 고액체납자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 유형별 분석하여 재산이 있는 체납자는 100% 압류를 하고 있으며, 무재산자에 대하여는 주소지와 연고지 등의 재산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 :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중 고성시장의 체납액이 6천5백만원을 상회하고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도 4천1백만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가?
- 답 : 법인재산을 채권압류해 놓고 있으나, 재산처분이 되기 전까지는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시 방문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형태는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 문 :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 바라며, 전액 사용할 수는 없는지?
- 답 :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 잔액 반환을 해야함.  
보조금 결산시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적되는 사항임.
- 문 : 매년 불용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 답 : 사업량 변경, 예산편성 이후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발생함.  
향후에는 판단을 철저히 하여 재투자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문 :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적기·적정요소에 예산집행이 되지 않아서라고 보는데 어떠한가?
- 답 : 편성된 예산은 제때 적소에 투입되도록 노력하겠음.
- 문 : 예비비 집행결정액 전액이 불용된 사유는?
- 답 : 구제역 방제 관련 약품 구입비 예비비를 집행결정을 하였으나, 전국적으로 구제역 재발이 없어 약품구입을 중단함으로써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임.

## 6. 토 론 : 없음

## 7. 심사결과

- 2003. 7. 1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